

● 300개 상조회사의 주요 재무정보 등 최초 공개

2010년도 총자산 1조 2882억원, 총납입자본금 규모 1902억원, 지급여력비율 8.3%p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300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자산·부채 등 재무현황, 선수금 내역 등 주요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정보 공개는 2011년 5월말 기준, 법정자본금인 3억 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300개가 대상이었으며, 지난 3월 18일 등록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277개 업체 등록했으며, 그 이후 자연 등록이나 법인 설립 등 신규 등록한 업체 23개가 포함됐다.

상조업체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300개 상조업체 자산규모는 총 1조2,882억 원으로, 자산규모별 분포를 보면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은 27개(9.0%)업체이며, 이 업체들의 자산합계는 9,718억 원으로 전체의 75.4%였다.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가 194개(64.7%)로 대부분이며, 이들 업체의 자산합계는 619억 원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했다.

전체 상조업체 부채규모는 총 1조 7,396억 원으로, 부채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42개(14.0%)로 이들 업체의 총부채는 1조 4,217억 원(81.7%)이었다. 10억 원 미만인 업체는 172개(57.3%)로 부채규모는 495억 원(2.9%)이었다.

2010년 말 기준 300개 상조업체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35.0%으로, 300개 상조업체 중 167개 업체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부채초과 현상은 상조업 특징 및 고객불입금의 회계처리 방식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의 재무안정성은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기존계약의 지속적 유지,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사업비 절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공개되는 상조회사의 총 납입자본금은 1,902억 원으로 대부분(237개, 79%)은 법정자본금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63개 업체는 법정자본금 수준 이상이며 평균 자본금 규모는 19억 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선불식 할부거래제도 도입 이후 상조업 등록, 자본금 확충, 선수금 예치 등으로 상조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의 불신도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부채초과상태이기는 하지만, 매출수익을 미래시점에 인식시키는 상조업 회계처리 특성과 지급여력비율 개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편, 제도 준수 등에 따라 중소 상조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어 상조상품 마케팅 지원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며, 업계 스스로도 과도한 모집수당 지출 등 마케팅 비용의 절감, 사업구조의 개선 등 경영 선진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한국·EU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국제카르텔과 다국적 M&A 대응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5일, 대회의실에서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 부위원장 등 EU 경쟁당국 대표단과 '한국·EU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국제카르텔과 다국적 M&A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는 김동수 위원장 등 5명이 참석하고, EU 경쟁당국에서는 알무니아 부위원장과 토마즈 코즈로우스키 주한 EU 대사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한국·EU 경쟁정책협의회를 통해 양국은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국제카르텔 사건 처리시 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집행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다국적 M&A에 대해서도 세계 경쟁당국간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양 기관이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경제 침체기일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법을 변함없이 집행함으로써 경쟁당국이 위기극복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 경쟁원리가 정부기관은 물론 사회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경쟁정책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하이테크(High-Tech)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보호와의 조화 문제, 상품융합에 따른 시장획정 문제, 법위반행위의 경쟁제한 효과 판단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양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공통 관심대상인 초국경적 기업결합과 국제카르텔 사건의 효과적인 조사·처리를 위한 향후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와 함께 EU 경쟁당국과 구축해온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며 우리 제조업 제1의 수출시장인 EU에서 우리 기업의 법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 추진

리베이트 방지 위해 의료기기 분야도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계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업계의 자율적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7일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고, 의약품 분야와 MRI 장비, CT 촬영 장비 등의 별도로 의료기기 분야의 공정경쟁규약도 마련함으로써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경쟁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사업자단체들도 의약품과는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사용방법에 관한 훈련이 필요한 의료기기분야에 적합한 별도의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었다.

이번에 제정을 추진 중인 규약 제정 관련 주요 원칙으로는 △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판촉활동 관련 행위를 구체화하여 의료기기 업계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제시 △ 주요 허용행위(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하여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 통제·감시기능 강화 △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이미 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규약제정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될 규약은 행위규범(Best Practice)으로서 향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허용범위를 넘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고객 유인행위로 보아 혐의가 있는 경우는 조사를 실시하고, 협회로의 신고 또는 협회의 자율심의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법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규약 제정을 위해 7월부터 9월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 공정경쟁규약(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발표…6개사 우수 또는 양호

21개 대기업이 651개 중소협력사에 총2550억 지원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21개 대기업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LG이노텍이 ‘우수’, 5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 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개요 〉

분야	평가대상	평가등급(기준점수)	기업명(가나다, 영문순)
하도급 및 유통분야	21개사	우수(90점 이상)	LG이노텍
		양호(85점 이상)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GS홈쇼핑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기업·중소기업·정부 간 삼각공조 프로그램(TCP; Triangle Cooperation Program)으로, 2011년 7월 21일 현재 93개 대기업이 32,940개 중소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 중이다.

2011년 상반기 평가는 하도급 및 유통 분야의 2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하도급분야는 2009년 10월 동반성장 협약절차(‘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등에 관한 기준’)가 대폭 개정된 이후 동 절차에 따라 처음 실시한 평가였으며, 유통분야는 2009년 4월에 제정된 유통분야 동반성장 협약절차(‘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 및 평가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두 번째 평가였다.

평가결과는 ‘우수’ 등급 1개사, ‘양호’ 등급 5개사이고, 이를 6개사에 각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다.

우수 기업인 LG이노텍은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하게 된다.

그러나 LG이노텍은 동반성장지수 산정 대상기업으로 협약을 다시 체결한 업체이어서 7개월간 면제된다.

양호 기업은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GS홈쇼핑 등 5개사로,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받게 됐다.

평가대상 21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 지원, 납품단가 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약 2,55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이노텍과 대림산업 등 18개 대기업이 539개 협력사에 대해 약 2,221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12개 대기업이 112개 협력사에 대해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라 약 329억 원의 납품단가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 21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납품단가 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약 2,55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평가대상 대기업들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18개사가 100% 수준으로, 16개사는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하는 등 자율적인 하도급거래 질서유지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술보호 지원, 교육훈련 지원, 상생협력부서 설치 등의 이행은 양호한 편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6개 업체 중에서 자금지원을 제외한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 수입자재 국산화를 위해 중소협력사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추진(LG이노텍)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408개 협력업체의 433명에 대해 실무교육 실시(현대건설) △ 상품력은 있지만 디자인이 열악한 7개 협력사를 위해 컨설팅비용 5억5,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해외 전문 디자인 컨설팅 업체에 디자인 개발을 의뢰(GS홈쇼핑)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평가결과 '양호' 등급 미만 기업도 공정거래 정착 및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했는데, 협력사를 위해 현금성 결제비율,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조정,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실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3/4분기에 9개사, 4/4분기에 16개사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평가 실시할 예정으로, 동반성장협약이 중소 협력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협약 체결 유도 등을 통해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기준 개정에 있어서는 납품단가 또는 판매수수료를 조정한 내용 등이 협약평가에 추가 반영되도록 평가기준을 대폭 보완하고, 동반성장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평가완료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협약 체결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동반성장문화가 공기업까지 확산되도록 공기업의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합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안 의결

자진신고 감면신청 지위 확인에 대해 공정위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명기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0일, 담합자진신고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2011년 7월 21일부터 시행했다.

운영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위원회의 자진신고 지위확인에 대한 취소사유를 명기했다. 현행 감면고시에서는 사무처장의 자진신고 지위확인을 위원회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①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 ② 제출 자료가 허위인 경우 ③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④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한 경우 ⑤ 제출된 증거자료가 피심인의 담합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진신고 추가 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감면고시에 의하면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 한 증거’ 중 확인서, 진술서의 경우는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를 서류, 물건, 전산자료, 통신자료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하기 위해 ‘서류, 물건, 전산자료, 통신자료’ 외에 ‘기타 이에 준하는 증거자료로서 관련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또한 단순 조사협조자 감경을 일원화했다. 최근 과징금고시를 개정해 담합의 경우도 과징금고시에서 조사협조자에 대해 감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감면고시 중 단순 조사협조자 감경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서, 감면고시는 공정거래법령에서 정한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담합 건이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한 단순 조사협조자 감경은 과징금고시에 따르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자료보정 기한을 최대 75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감면고시의 획일적인 자료보정기한(최대 75일)은 세계 각 지사에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 수집이나 번역본 제출 등 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카르텔 사건 처리에 애로가 있었는데, 국제카르텔 사건 등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해 보정기간 연장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75일을 초과하여 자료보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추가감면(Amnesty Plus) 신청자에 대한 과징금 추가 감경율을 조정했다. 현행 감면고시는 추가감면 신청자에 대한 과징금 추가 감경율의 하한을 획일적으로 20%로 규정해,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는 추가감면대상 사건의 과징금이 소규모더라도 20% 추가 감경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두 건의 공동행위 규모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위원회가 감경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가 감경율을 ‘20%’에서 ‘20% 범위 내’로 개정했다.

● 2011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35개의 계열회사 지분율은 47.27%로 전년 43.58%에 비해 3.69%p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지정한 자산기준 5조원 이상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분석·공개했다.

공개내용은 기업집단별·소속회사별 내부지분율, 소속회사간 주식보유, 주요 환상형 출자,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 기업공개 등의 현황이다.

공개된 자료의 따르면 내부지분율 현황은 55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38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4.20%였으며, 2010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35개의 내부지분율은 53.98%로, 작년 50.50%에 비해 3.48%p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38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1,364개 중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62개사(4.55%)이고, 총수일가 지분이 전혀 없는 계열회사는 949개사(69.6%)였으며, 3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집단 13개의 내부지분율은 58.52%로 일반 기업집단 25개, 52.18%보다 6.34%p 높았다.

계열회사간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중 전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기업집단 35개의 계열회사 지분율은 47.27%로 전년 43.58%에 비해 3.69%p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3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10개 집단은 순환출자를 완전해소(3개 집단은 유예 중)했고, 25개 일반집단 중 13개 집단에서는 여전히 순환출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현황에서는 총수가 있는 38개 대기업집단 중 26개 집단에서 131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17개 집단 소속 63개 금융보험사가 142개 계열회사(금융 94개, 비금융 48개)에 출자하고 있었고, 연속 지정된 35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회사 출자규모는 작년 3,521억 원에서 올해 3,724억 원으로 203억 원 증가했다.

기업공개 현황 및 상장·비상장사의 소유지분구조를 보면 전체 55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4개사 중 상장회사는 237개사(15.25%)이고, 비상장회사는 1,317개사(84.75%)였다.

최근 5년간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금년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1992년 이후 20년간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50%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53.5%로 증가했다.

기업집단별·소속회사별 상세현황 등을 오프니 <http://groupopni.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

소비자 및 서민 피해가 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 통해 서민생활 안정화 기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및 서민피해가 큰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개정,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소비자의 생명·안전·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서민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적극적 고발로 위법행위 억지력을 제고하고, 고발지침상 고발기준 점수와 고발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등과 관련한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고발기준 점수를 현행 2.7점 이상에서 2.5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생명·건강 등 신체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해 신체상 피해를 야기하는 부당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중' 이상으로 비중을 상향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부분을 부당한 표시·광고의 법위반 점수 산정의 고려요소에 포함시켰다.

광고비 및 광고횟수의 평가기준이 너무 높아 부당표시광고가 대다수 '하'로 평가되므로 현실에 맞게 평가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법위반 점수 산정과 관련한 기준을 합리화했다.

	개정 전	개정 후
상	광고비 5억 원 이상 또는 광고횟수 30회 이상	광고비 3억 원 이상 또는 광고횟수 20회 이상
중	광고비 3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또는 광고횟수 15회 이상~30회 미만	광고비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또는 광고횟수 10회 이상~20회 미만
하	광고비 3억 원 미만 또는 광고횟수 1회 이상~15회 미만	광고비 1억 원 이하 또는 광고횟수 10회 미만

그리고 법위반행위의 억지력 제고를 위해 위반기간 평가기준을 강화했으며,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 등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행위에 고의성이 있거나 취약 계층의 재산상 피해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나 또는 조사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적극적 시정을 위해 고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발 기준 점수에 관계없이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외적 고발사유를 구체화했다.

	개정 전	개정 후
상	3년 이상인 경우	2년 이상인 경우
중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하	1년 미만	1년 미만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고발기준 점수를 하향함으로써 고발 증대가 예상되는 한편, 위법행위의 적극적 시정을 위해 생명과 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위반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위반 예방효과도 기대 된다고 밝혔다.

● 국제카르텔 예방 동영상 제작·배포

국제카르텔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간단한 교육 및 예방 교육시 적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효과적으로 국제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관심 제고 및 배포가 용이한 온라인 동영상 제작을 추진, 기업 담당자 등을 포함한 TF를 구성해 콘텐츠를 제작했다.

동영상은 6분 분량으로, 주로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간단한 교육 및 예방 교육 시에 주의 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었다.

우리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제재 현황, 국제카르텔 사례, 각국의 법집행 동향, 기업담당자들의 행동수칙 등이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동영상을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와 블로그 및 사이버홍보관에 동영상을 게재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해서도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의 국제카르텔 예방 교육에도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 「전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정

향후 상조 해약환급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될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해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최종환급률이 81% 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6회차(120회 상품 기준)에서 10회차로 단축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조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중 해약환급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상조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조정해왔지만 환급금이 적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었고, 동 기준은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분쟁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근거하여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

고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납입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공제하되 모집수당 반영방식을 개선했는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모집수당 비율을 상품금액대비 15.3%에서 10%로, 관리비 비율을 월납입금대비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각각 상한(50만 원)을 설정했으며, 초기에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미상각모집수당 방식을 폐지하고 납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반영토록 개선함으로써 최초환급시점을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겼다.

그리고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해제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기존계약 약 330만 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기준 소급적용시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또한 부가상품의 가액에 대한 고지·동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85% 이상으로 환급토록 했지만 소비자가 부가상품을 일부 소비·훼손한 경우는 그 부분만큼 환급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시는 환급금의 하한을 정한 것으로 고시보다 유리한 환급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을 통해 사업자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관행 개선과 마케팅 효율화 유도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동 고시를 위반한 경우에 공정위와 지자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동 고시에 맞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효율적인 피해구제 등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 제도가 도입되고, 집단분쟁조정 기간이 단축되는 등 사업자-소비자간 분쟁조정이 보다 용이해지는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전원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회의 성격의 ‘조정부’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조정부’는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분쟁조정회의 관할 사항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관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분쟁조정회의’는 7~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및 소비자원장·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과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사건만 관할하게 된다.

그동안은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기한(현행 30일)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었지만, 사건 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 30일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집단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도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표당사자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조정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거부 이외에 조정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금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피해 구제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확정

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저작권 신탁법위선택제 도입 등 19개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1단계로 2009년에 공적독점 또는 장기간 독점이 지속되어 개선이 시급한 분야의 2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단계로 2010년에 서비스 분야와 공기업 독점분야 등의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년에는 3단계로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용 △ 응급의료시설의 면적기준 완화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등이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 저작권 '신탁법위 선택제' 도입 △ 여행업 등록기준에 대한 일몰제 적용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제 개선 △ 연예인 해외송출업체 규제 폐지 △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폐지 등이다.

운송산업 분야에서는 △ 자동차대여(렌터카) 가맹사업 허용 △ 선박대여업 등록시 선박톤수 기준 완화 △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 대형·고급 범인택시 사업의 진입차별 개선 등이다.

기타 서비스분야(방송통신, 교육, 건설) 분야에서는 △ 공익채널 선정기준 개선 △ 별정통신사업 등록시 조건부과 규정 삭제 △ 외국인 학교 및 유치원의 시설 임차대상 확대 △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 △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자본금확인서 발행기관 확대 등이다.

이번 개선과제는 과제별로 민간전문기관 연구용역(2010년 말),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11. 1.~2.), 국경위·총리실을 통한 이견조정(2011. 3.~7.)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지은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단가조정 협의시 조정시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지연하면 위법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30일 하도급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용역위탁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요건과 관련해 가격 급등 요건(비중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 등) 및 기간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단 9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과 더불어 원사업자의 성실한 협의의무 위반 사례를 추가했다.

즉,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협의시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면 성실한 협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리고 조합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계약체결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물량 등 하도급거래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된 기본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하고, 그러한 기본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하도급대금, 물량 등이 기재된 개별 발주서를 교부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한다는 것.

'원재료 가격 기준'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과 '계약금액 기준' (제2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게 된다.

원재료 가격 급등요건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한 경우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용역위탁의 분쟁조정 의뢰기준 조정에 있어서는 하도급분쟁조정 의뢰기준이 다른 위탁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용역위탁의 의뢰기준을 상향조정했는데, 제조·건설위탁의 조정의뢰 비율을 고려해 현행 기준인 피신고인 매출액 '50억 원 미만'을 '5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개정 하도급법령 관련 심사지침들이 제·개정됨에 따라 동 지침들에서 규정한 내용과의 통일성을 위해 관련 내용도 개정했다.

● 2011년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공개

기존집단 채무보증 2.1% 감소·신규집단 채무보증 1.4조 편입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기준 5조원 이상 55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채무보증현황 공개는 200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기업집단 정보공개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4조의5 규정에 따르고 있다.

2011년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 5개 중 3개 집단에 채무보증이 존재하고, 채무보증금액은 총 1조 4,384억 원이었다. 모두 제한대상 채무보증이지만, 신규 지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보증으로 공정 거래법 제14조에 따라 2013년 4월까지 해소 유예해야 한다.

2010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대기업집단 50개 중 13개 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금액은 총 1조 4,93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13억 원(2.1%)이 감소했다. 이중 유예 중인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이 보유한 4,214억 원으로 276억 원(6.1%)이 감소했고,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이 보유한 1조 719억 원으로 37억 원(0.3%)이 감소했다.

지난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부터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1998년 4월 63.5조 원, 2000년 4월 7.3조 원, 2005년 4월 4.0조 원, 2010년 4월 1.5조 원, 2011년 4월 2.9조 원 등으로, 금년은 신규지정 집단의 채무보증액 편입으로 증가했다.

● 파워블로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

광고주로부터 대가 받고 추천글 등을 게재할 경우는 대가 받은 사실을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보증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현금이나 당해제품 등의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토록 했다.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된다.

또한 추천·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고, 이러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광고주에게 있기 때문에 광고주는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상품홍보를 할 경우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함께 공개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자 수 제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유료 광고임」 또는 「대가성 광고임」 등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등의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해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대해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피침인의 방어권 보장·사건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침인, 신고인의 권익보호 및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절차규칙)을 일부 개정해 9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피침인 및 신고인 권리 보호와 관련해 피침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원회의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심사보고서 송부시 신고인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심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시 신고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거나 신고인이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권인지 사건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심사 착수보고 시한(현장조사 완료일 후 30일 이내)을 설정하고, 직권인지 및 신고 사건의 경우 사건 심사 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서면으로 착수보고 여부를 통지하며, 착수보고 없이 종결처리 하는 사건의 피조사업체에 대한 통지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시정조치 사후 이행 확인절차의 명확화를 위해 이행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사건절차규칙에 규정하여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례에 걸쳐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하게 된다.

병합사건 처리기준 및 법위반 횟수 산정 기준을 마련했는데,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건병합의 요건 등을 명문화하고 법위반 횟수의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심판정 공개 관련 규정도 심리·의결의 비공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심리공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 결과는 의결서 생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심판관리관이 통지도록 규정해 개선하고, 위원회의 법위반 판단기준시점일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심의 종결일을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절차규칙의 적용범위에 할부거래법을 포함해 할부거래법 관련 사건 처리시 절차규칙에 의거 처리 토록 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공동행위에 대한 상정대상 기준을 통일했는데 부당지원행위의 전원회의 상정대상 기준을 현행 지원금액 10억 원 또는 지원성거래금액 100억 원 이상 보다 2배 상향했다.

● 김동수 공정위원장,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 간담회 개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3~7%p 인하 합의

11개 대형유통업체 대표들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월 6일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를 현재보다 3~7%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화점업계에서 롯데 이철우 대표, 신세계 박건현 대표, 현대 하병호 대표가, 대형마트업계에서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 이마트 최병렬 대표, 홈플러스테스코 왕효석 대표가, TV홈쇼핑업계에서 농수산 도상철 대표, 롯데 신현 대표, CJO 이해선 대표, GS 혀태수 대표, 현대민형동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율(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률)을 3~7%p 인하하고, 인하시기는 2011년 10월로 하고 세부적인 인하 폭과 인하대상이 되는 중소업체 등은 유통 업태별 설정에 맞게 해당 유통업체가 결정 △ 10월부터 신규 중소납품업체와는 현재 1년인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거래기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장 연착륙을 지원 △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및 상품개발비용 지원 등 유망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입점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등 중소납품업체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012년 1월 신규·개신 계약부터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해 선진 계약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2012년을 부당반품·감액, 판촉비용 부당전가, 상품권 구입 강제, 서면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원년으로 선언하는 한편, 합의내용을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에 포함해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9월 중에 대형유통업체가 자율적인 동반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 및 자율개선 유도를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형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및 추가부담 실태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업태별로 대표적인 상품군을 대상으로 5~10%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수료 변화 추이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며,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으로 수수료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이후에는 서면계약서 교부 및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시행

소비자피해, 기업의 자율처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스스로 친소비자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존의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인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를 개선한 것으로,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CCM을 시행하게 된 것은, 기업 경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공권력에 의존해 해결하는 대신 기업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해 그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자율경영을 확대하고 소비자만족도를 개선하며 대중적 성격의 공권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CM은 기업이 소비자 불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할 수 있는 내부체계로 리더십(최고경영자의 CCM 실천의지, 담당임원의 권한과 책임), 소비자중심 경영체계(소비자 관련 인적·물적 조직, 매뉴얼 보급), 소비자정보시스템(소비자 정보제공 채널, VOC 관리·운영 프로세스), 소비자불만관리 프로세스(사전 예방 활동, 사후처리 프로세스), 성과관리(소비자 요구 사항 경영반영 또는 개선 실적)로 구성되어 있다.

CCM의 도입 희망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 도입신청을 하고 CCM 실행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되는데, 도입·운영기업 중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평가신청을 CCM 평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하고, 이 평가에서 기준점수(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 이상을 획득할 경우 공정위가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기존 CCMS 도입·인증기업은 CCM 도입·인증기업으로도 인정되는데, 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하게 된다.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인 표시·광고법, 방판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 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하도록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1단계(인증기업)는 공표크기, 공표기간 등 하향조정, 2단계(인증기업이 위반행위 자진시정)는 공표명령을 면제하는 등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 제재수준을 경감하는 한편, 우수모범기업 포상과 CCM 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게 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 불만은 많지만 CCM을 도입·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를 위해, 사업자단체가 CCM을 도입해 소규모 회원사의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10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대상에 중앙대 경제법학회팀

대학(원)생들의 모의 공정위 경연··공정위 심판정보다 더 치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제10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조달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20개 대학 22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주식회사 씨조이이 앤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주제로 경연한 중앙대 경제법학회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주식회사 해리츠금융지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및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서울대 경제학부팀, ‘(주)아이유 플러스와 (주)엠앤엠 커뮤니케이션의 기업결합에 관한 건’의 한양대 학부/법전원 연합팀, 그리고 ‘(주)유한킴마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및 (주)산뜻한나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의 경북대 경제법학회팀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비바인코포레이티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비바인코포레이티드와 몬스터카드월드와이드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의 숙명여대 경제법학회팀, ‘7개 삼푸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고려대 경쟁법학회팀, 그리고 ‘지자 기업집단계열회사 등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의 충북대 로스쿨 기업법학회팀이 수상했다.

또한 XK텔레콤 주식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학회팀과 ‘한국보이자제약(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한국보이자제약(주)와 (주)돌미약품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인기상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학회팀이 수상했다.

공정위는 금번 경연주제에는 최근 경쟁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스마트TV, 소셜커머스 관련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매우 흥미진진한 경연으로 꾸며져, 경쟁정책 운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도에 개최될 제11회 모의공정위 행사가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특히 모의공정위 준비에 과다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 개최

공정위, 가맹·유통분야의 공정경쟁 촉진 위한 방안 마련

정부는 9월 9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맹·유통사업 및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집중 추진키로 하는 한편,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등 건전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보고안건으로는 △ 가맹·유통사업 분야 공정경쟁 환경조성방안(공정위) △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조성방안(방통위·문화부) △ 공생발전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방안(권익위) 등이었다.

가맹·유통사업 분야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유통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업태별로 대표적인 상품군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를 검증하고 비용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가맹사업 분야는 리뉴얼·매장 확장 강요, 영업지역 침해 등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범거래관행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가 스스로 자율규약을 마련해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통사-콘텐츠 개발자(CP)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제도를 개선하고, 앱스토어에 적용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케이블방송사(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SO-PP간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케이블 방송사 재허가시 반영할 계획이며,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혜용 및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한편,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작역량을 갖춘 외주제작사를 육성할 방침이다.

건전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표준취업 규칙에 반영해 기관·기업·단체의 공익신고 처리 전문성을 제고하고, 익명·부정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 수입 증대에는 공정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을 위해 보상정보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하고 행정기관이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는 분야별 공정사회 실천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약자 재기 지원’, ‘나눔문화 확산’ 등 공정사회 80개 실천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2011년 7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6월보다 2개 회사 증가한 1580개

2011년 8월 1일 현재 55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580개로, 지난달 1,578개에 비해 편입 17개, 제외 15개 등 2개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7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11. 7. 1.	편 입				제 외				증감	2011. 8. 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기타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55개)	1,578	5	7	5	17	4	2	1	8	15	2	1,580

편입내역을 살펴보면, 12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과 지분 취득 등으로 총 17개 소속회사가 증가했다. △ 회사 설립 5개 {에스케이 : 피엠파(주) / 지에스 : (주)지에스에스앤에스} 등 △ 지분 취득 7개 {포스코 : (주)리코금속 / 신세계 : (주)하남유니온스퀘어} 등 △ 기타 5개 {대우조선해양 : 대한조선(주) / 동국제강 : (주)에임즈} 등이다.

제외내역으로는 8개 집단에서 계열사 △ 흡수합병, 지분 매각 등으로 총 15개 소속회사가 감소했다. △ 흡수합병 4개 {씨제이 : (주)디지털온마디어 / 현대백화점 : (주)현대에프엔지} 등 △ 지분 매각 2개 {에스케이 : (주)티에스케이워터 / 지에스 : (주)알폰소로베르그코리아} △ 청산종결 1개 {한화 : (주)춘천테크노밸리} △ 기타 8개 {현대자동차 : 울산청천(주) / 코오롱:광교배움터} 등이다.

● 2011년 8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7월보다 20개사가 증가해 1,600개

2011년 9월 1일 현재 55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600개로 지난달 1,580개에 비해 편입 28개, 제외 8개 등 20개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8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11. 8. 1.	편 입				제 외				증감	2011. 9. 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기타	계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55개)	1,580	20	4	4	28	2	5	1	8	20	1,600

편입내역을 살펴보면 14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과 지분 취득 등으로 총 28개 소속회사가 증가했다. △ 회사 설립 20개 {한국전력공사 : (주)캡코우데 / 엘지 : 화장품나라(주) 등} △ 지분 취득 4개 {포스코 : (주)뉴알텍 / 씨제이 : 영우냉동식품(주) 등} △ 기타는 4개 {에스케이 : (주)에이앤티에스, 동부 : 화우캐피탈(주) 등} 이다.

제외내역으로는, 6개 집단에서 계열사 흡수합병과 지분 매각 등으로 총 8개 소속회사가 감소했다. △ 흡수합병 2개 {삼성 : (주)에이스디지텍, 에스케이 : 케이파워(주)} △ 지분 매각 5개 {삼성 : (주)메디슨엑스레이 등 / 동부 : 동부광양스틸유통센터(주) 등} △ 기타 1개는 {코오롱 : (주)파주병영}이다.

● 공정위 인사 동향 (2011. 7. 11. ~ 9. 9.)

11.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서기관 한철기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보함.
- ▶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서기관 최영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보함.

17.

-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행정사무관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2011년도 국비장기 국외훈련계획에 의거 미국, Duke University 파견근무를 명함
(파견기간: 2011.7.17.~2013.6.16.).

18.

-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서기관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2011년도 국비장기 국외훈련계획에 의거 캐나다, Arbutus College 파견근무를 명함
(파견기간: 2011.7.18.~2012.7.17.).

22.

- ▶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행정사무관 이준현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근무를 명함.
- ▶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행정사무관 이하나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류태일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근무를 명함.

25.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이유태
미국, 워싱턴주 검찰청 파견기간 연장을 명함
(파견연장기간: 2011.7.26.~2012.1.15.).
-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 한정희
고용노동부 전출을 명함.
- ▶ 고용노동부 행정주사 유미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박혜정

한시계약직공무원 7호에 임함.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근무를 명함(계약기간: 2011.7.25.~2012.7.24.).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사서주사 정경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을 명함
(기간: 2011.7.25.~2012.8.31.).

27.

▶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행정사무관 권현진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을 명함
(기간: 2011.7.27.~2012.1.26.).

▶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안병규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근무를 명함.

31.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행정사무관 정원선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전출을 명함.

▶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사무관 양의석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근무를 명함.

32.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유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육아)휴직 연장을 명함(기간: 2011.8.2.~2012.8.1.).

35.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권혜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유학휴직)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휴직기간: 2011.8.8.~2011.9.10.).

38.

▶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경제분석과 행정사무관 조환진

공정위 소식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고용후직)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기간:2011.8.8.~2013.8.7.).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김의래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근무를 명함.

8.12.

- ▶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행정사무관 안영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 상임위원실 기능8급(사무실무원) 김은정 운영지원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남상준
- ▶ 운영지원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이상남 종합상담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노현숙
- ▶ 종합상담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이해숙
- ▶ 종합상담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이소정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오은주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조경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정재용
- ▶ 기능7급(사무실무장, 근속승진)에 임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기능8급(운전원) 김종현 기능7급(운전장, 근속승진)에 임함.

8.16.

- ▶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행정사무관 한정현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을 명함
(기간:2011.8.16.~2012.2.15.).

8.17.

-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준 파견복귀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통령.

9.1.

-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한시계약직7호 박혜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 상임위원실 기능8급 사무실무원 유현정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육아휴직을 명함
(기간:2011.9.1.~2012.8.31.).

9.2.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윤은정

- ▶ 복직을 명함.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 최현록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양행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 임수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박철균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9.5.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피계림

- ▶ 복직을 명함.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근무를 명함.
- ▶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서기관 장춘재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파견 근무를 명함(기간:2011.9.5.~2012.8.31.).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 정인태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호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명함
(기간:2011.9.5.~2012.3.31.).

9.9.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권현진

- ▶ 복직을 명함.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9.9.~별도발령시까지).
-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행정주사보 김홍 서울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 ▶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주사보 이민규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행정주사보에 임함.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